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194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40,122,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 7,55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가. 원고는 1993. 9. 3. 설립되어 공동주택 및 빌딩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1. 10. [redacted]구 B빌딩 4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2. 2. 25. 서울 용산구 C, 308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 [redacted]구 D에 있는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 'E 관리단'과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관리비 징수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재무 관리,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경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E 관리단은 원고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8. "등록번호 : F, 법인명(단체명) : A ㈜ E, 개업년월일 : 2008. 7. 1., 사업의 종류 : 부동산업[공동주택(APT) 관리], 사업장 소재지 : 이 사건 건물"로 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하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고, E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사무소를 제공받아 2011. 9.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다가 같은 날 폐업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G과 함께 2009. 10.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62,773,000원의 1/2에 해당하는 581,386,500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627,730원과 지방교육세 2,325,54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다음 2009. 12. 24.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0. 10.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0,122,640원(= 본세 23,255,46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651,09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216,090원)과 지방교육세 7,559,400원(= 본세 4,651,09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65,1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443,2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고, 등록세액의 증감에 따라 그 세액이 결정되는 지방교육세와 가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원고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위 관리사무소가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본점이 취득하여 본점이 직접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지점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인구와 경제력이 대도시 내로 집중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된다.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분사무소와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8 내지 14호증, 을 제1, 2, 3,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E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사무소와 창고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인원을 총 25명으로 하고 E 관리단과의 협의로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 및 대행자를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켜야 하고, 원고의 종업원과 원고가 제3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의 업무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건강, 신원, 법률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한 원고의 종업원은 2009년 25명, 2010년 17명이다.

(3)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에 사업장명을 'A(주)E'로 하여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70,060원과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16,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2009. 1. 1.부터 2011. 9. 2.까지 수행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4)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2. 2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2. 28.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정정하고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업(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5)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인 G과 원고는 2010. 1. 14. "성명 : G 외 1명, 개업년월일 : 2009. 12. 20., 사업의 종류 : 부동산[임대], 사업장 소재지 : 이 사건 상가, 공동사업자 : A ㈜ F"로 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공동사업자 부분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이다.

(6) 원고는 2010. 1. 25.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용역에 관한 공급가액 2,518,886원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었던 2010년 1기분부터 2011년 1기분까지 G은 'H'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2011년 2기분은 G이, 2012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는 원고와 G이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7) G과 원고는 2011. 1. 27. 이 사건 상가 중 우측 부분(전용 약 125평)을 1년간(2011. 2. 14. ~ 2012. 2. 13.) [redacted] 주식회사에 임대하였고, 2011. 9. 9. 이 사건 상가의 1/2 부분을 2년간(2011. 9. 24. ~ 2013. 9. 24.) I에게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의 성명란에 'G 외 1명(공동사업자:A(주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8) 원고의 본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로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세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지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원고 지점의 부동산 임대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지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다음 이미 납부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차감하고 각 가산세가 포함된 등록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원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 관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원고의 지점으로 본다면 관리업무를 개시할 때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매년 관리업무를 개시하는 사업장이 생기는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항상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원고의 지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지점과 관계되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만을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하는 이상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항상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분산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상가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됨으로 인한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 등록세 중과규정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에게 등록세 중과규정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